##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16 발의연월일: 2022. 9. 8.

발 의 자:이양수·권성동·박덕흠

박 진 · 서삼석 · 소병훈

위성곤 • 윤재갑 • 윤준병

이달곤 • 이철규 • 최춘식

홍문표 의원(13인)

#### 제안이유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반면에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만 연간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임업공익직불제와 달리 수산공익직불제에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기본형 직접지불제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어선원의 경 우 대부분 급여체계가 보합제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불제 대 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 나.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 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호, 제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 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 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 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 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 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할 것
  -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적격 여부 확인 및 제4항에 따

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 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

선법」 제13조에 따른 선적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읍·면· 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 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로 선정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적격 여부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8조 또는 제14조"를 "제8조, 제14조, 제18조의 2 또는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 모어가 직접지불금,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 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제30조제2호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4</u> 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
	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
	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
	<u>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u>
	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
	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
	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
	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
	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

### <신 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 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한다.

② (생 략)<신 설>

<신 설>

<u> 기 기 타기 현계 다 다 한 기기</u>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
<u>다)</u>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대상) 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u> </u>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
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
선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
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가 지저지부레드"라 하다)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 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 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보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중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

<신 설>

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 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 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 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 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 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 면·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 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

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 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 면·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 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 려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 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 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적격 여부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신 설>

- 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 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 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제2조제3호의 가족

   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

   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동일 세대 내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신 설>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수 없다.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 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 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적항을 의미 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읍· 면·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 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어선원 직접지 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 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

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어선 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 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 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 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어 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다.
-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 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 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 격 유무·적격 여부 확인 및 제 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

- 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 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갖추지 못한 경우

4. ~ 7. (생략) <신 설>

<신 설>

한) ①	 

- 1. 2. (현행과 같음)
- 3. 제8조 또는 제14조의 요건을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 는 제18조의4-----
  - 4. ~ 7. (현행과 같음)
  - 8.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각 목 의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 역 직접지불금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 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

② • ③ (생 략)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 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

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 (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 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 다)인 경우

-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 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 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 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 불금

②・③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의5제1항
증명하여 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